

글 실는 순서

VOL 06

#### 04 기고문

-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 장승용(주)열심히 커뮤니케이션 대표

#### 06 송영천 대표 변호사 회장 취임식

- ♥ 취임사 | 송영천 대표변호사 회장
- ♥ 환영사 | 새로 오신 님, 빛나소서 • 서향희 대표변호사
- ♥ 축사 | 송영천 대표변호사 회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 김승남 조은문화재단 이사장

#### 14 새빛 뉴스

##### 16 새빛의 법률세상

- ♥ 이거서 기쁜 사건 | 포괄임금제 합의의 효력 및 통상임금의 범위 • 성미경 변호사
- ♥ 주요 판례 사례 | 진보성 없는 특허에 기한 특허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 ♥ 최근 개정 법령 | 동산 · 차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26 새빛만평

- ♥ 일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개념(1) • 송창영 변호사
- ♥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 배우성 고문
- ♥ 日本 M&A 시장에도 韓流가 가능할까…(상) • 이정철 전무

##### 36 새빛인의 서재

- ♥ 6월의 추천도서 | <내 인생의 논어 그 사람 공자>, 이덕일 씀, 옥당 펴냄
- ♥ 7월의 추천도서 |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마라>, 백지연 씀, 일마 펴냄



#### 42 새빛미당

- ♥ 금융투자 성공을 위한 두 번째 비밀: 잊지 않고 투자하기 • 김일구 한국 씨티은행 부장
- ♥ Rocky Mountains • 박진희 사원
- ♥ 댄스와 함께 시작하는 인생 2막 • 류건후 Sway Dance 대표
- ♥ 사-축제 / 들꽃 • 서향희 대표 변호사
- ♥ 쑥쑥 새빛 영어 • 김근우 호주변호사
- ♥ 아홉번재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소감문 • 김민진 변호사
- ♥ #SaveMyFriend • 정 윤 사원

#### 65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66 전국민 상생의 관심 프로젝트

- ♥ 동반자 프로젝트 3호 후기\_1 • 손지성 변호사
- ♥ 동반자 프로젝트 3호 후기\_2 • 서효성 후원자
- ♥ 동반자 프로젝트 4호 대상자 | 금북초 5학년 김지혜 양 • 성미경 변호사

#### 70 새빛광고

- ♥ 새빛의 기념품을 소개합니다
- ♥ 새빛 어린이 축구단 '꿈의 전사' 제2기를 모집합니다
- ♥ 8월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안내
- ♥ Sway Dance 광고



새빛이 보내는 러브레터 [www.sebitlaw.com](http://www.sebitlaw.com)

통권 06호 발행일단기 4345년 7월 2일 발행인 범무부인새빛  
발행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5-3 포스코P&G타워 18층  
편집인 범무부인 새빛 총무팀 TEL 02 3448 0030 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 02-515-3881 [www.sebitlaw.com](http://www.sebitlaw.com)

## 기고문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장승용 (주)열심히  
커뮤니케이션 대표

개인정보는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인가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때에는 기업마케팅에 중요한 도구이지만, 악용되면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 최근 우리 회사는 공정위와 방통위로부터 동시에 회사의 존명이 걸린 중대한 행정 처분을 받았다. 우리 회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보험사에 텔레마케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일을 하면서 일찍부터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 유출 시 막대한 사회적 파장을 인식하여 DB를 암호화하고 보안 서버를 구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 그동안 단 한 건의 유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형태의 건전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같다. 해커가 기업 서버에 침입해서 신용카드 등의 개인정보나 기업의 기밀데이터를 훔쳐서 팔았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고지 내용을 모두 알리고 보험사에 제공하겠다고 알리고 동의를 받아 제공한 걸 가지고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식의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이다.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정부 기관은 각종 지침, 안내서, 해설서 등을 발간하여 통하여 이러한 형태의 이벤트 사업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여 왔다.

우리 회사의 사업 형태는 예전에도 한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으나, 그 때에도 새빛의 법률자문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것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옥션, 국민은행 하나로 텔레콤 고객정보 불법유출 최근의 네슨, EBS 등 주요 기업 홈페이지 해킹 사건들까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대출 관련업체, 대리운전업체, 유통업소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각종 불법 스팸 문자와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불법업체와 정상적인 업체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상적인 업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쳐서 적법하게 사업을 한다. 이는 회사의 규모와도 상관없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불법업체와는 모든 과정이 다르다.

기사에 따르면 2011년에 신용카드사가 보험사로부터 정보제공과 보험판매실적으로 받은 금액이 1조 3천억 원가량 된다고 한다. 하지만 금감원이나 방통위는 신용카드사를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2012년 1월 25일자)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상업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 사이의 균형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하는 단계부터 목적과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업은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삭제 요구 시에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의 지침에 따르더라도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동의를 받으면 수집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다행히 이번에도 새빛의 법률자문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상당 부분 면하였다. 물론 우리회사 역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적법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 공간에서는 개인정보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다. 행정청은 관료주의에 젖어 기업들을 마냥 규제하고 억압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와 가이드를 제시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 취임사

### 송영천 대표변호사 회장 취임사



송영천  
대표변호사 회장

우선 누구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쑥스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대표의 계획과 추진을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쑥스럽다고 마냥 말릴 일만은 아닌 것 같다(웃음)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고르지 않은 날씨에도 서향희 대표 부모님이 멀리 부산에서 올리오셨고 김승남 회장님께서 분에 넘치는 환영사를 해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새빛 가족들을 중심으로 지인들만 초대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대표와 김승남 회장 두 분들은 이곳에 나오면서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환영사를 써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감정을 업 시키려면 안 써오는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대표가 역량있는 소속 변호사들을 시켜서 취임사를 작성하여 가져오지 않나 내심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웃음).

우선 제가 새빛에 오게 된 과정을 서대표가 몇 가지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2009년에 법원에서 퇴직할 때부터 서대표가 자기의 법무법인으로 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일이 바쁘다 보니 3년이 지나서야 그것이 성취가 되었네요.

무릇 개인 한 사람이 조직의 부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경우보다는 같이 협력이 되는 경우에만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대표가 이 새빛의 부흥에 관하여 3년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하였고, 기존의 송무 중심으로 되어있던 법무법인과는 달리,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금융부문 등 특화된 분야에 전문가를 보강하고 노하우도 쌓아왔기 때문에, 새빛이 특화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원하는 아시아 최고의 법무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건 저희들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겠지만, 여기 오신 우리 법인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많은 격려와 도움이 있으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수원에서 교수를 할 때 연수생들 이름을 외우느라 애를 먹은 일이 있는데, 지금 새빛이나 앞으로 더 규모가 커질 새빛의 식구들 이름을 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당시 새로이 연수생들이 들어오면, 매일 헬스클럽에서 런닝머신을 이용하면서 기계 앞에다 이름을 적어 놓고 최단기간에 외운 기억이 납니다.

새빛 식구로 새로 오신 분들은 물론 기존에 계셨던 이석종 대표나 조용호 대표가 열심히 송무분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금감원 분야에 강진원 변호사를 비롯한 4분이 오셨기 때문에, 더욱 더 특화된 부분들이 보강이 되는 느낌이고, 그런 전문가들이 저희 새빛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제가 뒤늦게 중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배우성 고문님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열심히 중국어와 중국법을 많이 공부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취임을 기회삼아 새빛 가족과 저희를 잘 아는 클라이언트들이 협력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영사

### 새로 오신 님, 빛나소서



서홍희 대표변호사

우리 교수님 제 인생의 첫 스승님, 제 어린 시절 방황을 몇게 해주신 분,

이제 법무법인 새빛의 대표변호사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송영천 회장님은 1957년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광주제일고와 단국대 법대를 졸업하신 후 식사학우를 취득 하셨으며,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시고, 198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하셨고, 200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하셨습니다.

환영사를 하는 저와는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활동하실 때 스승과 제자로 인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스승님을 새빛의 회장님으로 모신 이유는 회장님의 사람과 세상에 대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시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연수원 시절 저는 부적응이었습니다. 매일 연수원에 출근하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 고민을 안고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왕 들어왔는데 수료만 해라.”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연수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전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너무 힘들었을 때 회장님께 그만 접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역시 일관성 있게 우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왕 만들었는데 한번 버텨봐라.”

정말 신기하게도 그 뒤 법인분리와 합병, 사무실 이전까지 법무법인으로 할 수 있는 온갖 푸닥거리들을 해오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새빛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자리 빌려 기적과도 같은 위로로 저를 항상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던 회장님께 큰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회장님 가족분들 사이의 사랑과 우애는 놀랍도록 부러울 정도입니다.

고노의 시간을 가질 때면 서로에게 즐겁고 신뜻한 청량음료와도 같은 편지를 보내어 서로 간에 성의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마도 6형제 자매 중 4분의 고시합격이라는 신화를 이루어낸 배경에는 이와 같은 편지로 맺어진 끈끈하고 확고한 동지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편지들 중 특히 회장님의 사법시험 준비과정에서 가족들이 보내준 편지를 발췌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끈끈한 정과 완성된 인간들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교류하는 성숙함을 느껴보십시오.

청렴결백한 천재형 아버님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오직 집념과 일사분란한 노력으로 정진하는 너에게 기망성취가 있기를 기원하였으며 어김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확신한다. 장하고 믿음직한 내 아들 영천아. 너는 실질적으로 부모에 효도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우리 가문을 빛내줄 유망주임을 강조하고 싶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던 불타는 열정의 하성 형님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거시인적인 예수님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갖도록 기도를 하였고, 사법고시에서 광야훈련에서 이기신 예수님께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말이 필요없는 영길 동생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비굴한 꼴을 보이지 않기 위해 합격해야겠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리라 믿고 오직 그날그날에 충실히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대단한 가족입니다. 최근에는 큰형님 송하성 교수님 자제분끼리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진기록을 만들어낸 이 가족의 전설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회장님은 절대 순수한 분이십니다.

순수함은 언제나 위대한 힘이며 축복입니다. 그 순수함에서 교수님의 상대방을 간명하게

뒷면에 계속

## 환영사

이해시키면서도 주변을 순식간에 초토화로 만드는 촌철살인의 멘트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주위가 얼마나 밝아지고 유쾌해지는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답답하실 때 우리 회장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회장님은 이미 소개했지만 포기할 줄 모르시는 분입니다. 매사 끝장을 보십니다. 바빠야 생활이 건전해진다고 하십니다.

그 이면에는 그칠 줄 모르는 긍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회장님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으셨고, 뒤늦은 수술로 평생 불편함을 안고 생활하시야 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등산과 수영 골프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십니다. 저 산은 성하든 성치 않은 누구에게나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회장님의 긍정적인 사고는 오히려 약간 절룩거리시는 걸음도 경쾌한 리듬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제일 잘 달리는 아이가 아닌 즐겁게 달릴 줄 알았던 아이는 언제나 어디서나 가슴을 활짝 펼 줄 알았고, 어려움을 극복한 용감함은 당당한 기품을 갖춘 리더가 되게 했습니다. 지금은 저 넓은 중국대륙을 접수하시기 위해 중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느끼지만 놀라운 분입니다.

회장님은 가슴이 따뜻하신 늘 남을 배려하는 분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광주에서 씩씩하게 자취를 하며 공부했고, 어려운 가정을 생각해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등록금 없이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선택했으며,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대학 4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을 10위권으로 합격했고, 판사임관 순서 6등 이었지만 외로우신 어머님을 생각해 광주지법을 첫 부임지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회장님을 떠올리면 항상 제자 걱정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제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실망을 주는 저 같은 제자에게도 절대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제자들은 진정으로 스승님을 존경합니다. 깊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사법연수원 31기 어느 조보다도 저희 1반 A조에게는 단합의 힘이 있습니다. 스승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 저희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진리를 스승님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처음 저희 법인을 스승님께 맡기려 찾아 봤었을 때 회장님께서는 딱 두 말씀만 하셨습니다. “향후가 오라면 가야지”,

“그래. 니가 하고 싶은게 뭐나?”

그 물음에 저도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아시아 넘버원 새빛입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 반응도 간명했습니다.

“있었다”

그렇게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산을 헤매고 쏘이다니던 그 아이, 산딸기, 진달래꽃, 머루, 달래, 오디, 도토리 열매를 먹으며 호연지기를 기른 그 이쁜 아이는 재학 중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법무법인 새빛을 아시아 최고의 일류 로펌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새빛 가족들 모두 믿고 회장님을 스승님처럼 따르겠습니다.

부디 새로 오신 님 빛나소서..

회장님께 취임식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렸던 때 회장님의 재미난 반응을 소개합니다.

“그거 하면 니가 돈을 버나?”

저는 당연히 “법니다. 많이 법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께서 저의 이 답변을 진실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빼른 시일 내에 사건 하나씩 가지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우리 위대하신 회장님, 이 시대 진정한 멋쟁이 회장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법무법인 새빛의 제2의 건국일입니다. 창립기념일도 오늘 2012년 5월 17일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만큼 회장님의 취임은 새빛의 경사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축 사

### 송영천 대표변호사 회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조은문화재단  
김승남 이사장

'날마다 반드시 새로워진다'는 법무법인 새빛에 에너지 넘치는 분이 함께하시게 되었습니다.

축하와 성원을 드립니다.

송영천 변호사님께서 과거에 훌륭하신 각급 법원의 판사로, 부장판사로 또 사법연수원 교수로 계시면서 후배들이 사숙하고 좋아하였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 내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영천 회장님

여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사랑하겠다는 멋진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법원, 검찰, 회계법인 여려 분야에서 터득한 다양한 경험을 소중한 고객들에게 나누어 힘이 되어 주고,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가장 신뢰받는 로펌을 만들고 싶어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이루시려는 새빛의 비전이 기대됩니다.

진한 사랑 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꿈 꾸고 도전하는 새빛의 역사를 잘 가꾸시어 머리로써 운영하는 로펌이 아닌 따뜻한 가슴으로 고객의 사랑 받는 정성을 모아 새빛으로 온 세상에 비추시기 소망합니다.

새빛의 엘리트 전문가 여러분,

얼마 전 이 석종, 조 용호, 서 향희 대표변호사님들의 의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에 대한 친절하고 겸손한 서비스, 핵심역량을 강화한 새빛만의 창의적 서비스, 기존 법률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고객중심 서비스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송 영천 회장님과 어깨동무하셔서 역동적인 에너지 나누시기를 조언합니다.

여러분이 지향하는 아시아 No.1 금융중심의 로펌을 만드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새빛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존경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이룬 성취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이런 가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법무법인 새빛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자닌 전문가들이 이루는 새빛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에 전해 오는 평화가 느껴집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후원하고,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새빛의 엘리트들을 보고 진정으로 우리 사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시므로 우리의 장래는 밝게 변화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송영천 회장님, 새빛의 엘리트들, 좋은 고객들과 함께 이제 이루려는 멋진 꿈과 이상을 존경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조은문화재단 이사장 김 승 남

## 새빛 뉴스

### 취임식

송영천 대표변호사 회장 취임식



법무법인 새빛은 2012년 5월 1일 법무법인 청담의 대표변호사 송영천 변호사를 영입하고, 2012년 5월 17일(목) 오후 5시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 풀에서 대표변호사 회장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흥겨운 스웨이 댄스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송영천 회장의 취임사 및 서향희 대표의 환영사, 조은시스템 김승남 회장의 축사로 이어졌으며, 통일을 염원하며 함께 부르는 남북밴드의 축가 공연을 끝으로 취임식을 마쳤습니다.

송영천 회장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하신 후,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직하신 후 법무법인 청담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 아홉 번째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개최



법무법인 새빛은 2012년 6월 13일 오전 7시 30분 역삼동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 풀에서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의 저자 주식회사 S&T 그룹 최평규 회장을 모시고 "기업은 위기의식 속에서 성장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최평규 회장은 사중일관 유쾌한 분위기로 강연을 이끌었고, 그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체험한 여러 사례를 통해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자문위원 위촉

**배우성 고문, 사단법인 부산울산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새빛의 배우성 고문은 2012년 4월 25일 사단법인 부산울산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새빛연수원 분격적인 연수 시행

**"아직은 로스쿨생,  
프로페셔널로 대변신"**



법무법인 새빛은 법률시장 개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배출이라는 시대적 급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고객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새빛연수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새빛연수원은 새빛연수원생으로 선발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 10명과 이들을 지도 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6월 1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후 6개월간의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새빛연수원에서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전문지식 교육과 함께 균형감각을 갖춘 시대의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경제학, 역사, 음악 등의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 "한국법제도 연수" 참가

중국 판사 28명 법무법인 새빛 방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최 "The Korean Legal Research Program for Chinese Judges 2012"에 참석한 중국 판사 28명이 연수과정 중 한국 로펌에 대한 이해를 위해 법무법인 새빛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법무법인 새빛은 역삼동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 풀에서 중국 판사 28명과 인사를 나누고, 법무법인 새빛의 지하철 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한 후, 한국 및 세계 법률시장의 현황, 법무법인 새빛의 현황 및 철학에 대한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식일정이 끝난 후에는 법무법인 새빛 소속 변호사들과 중국 판사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양국의 사법제도와 한국의 로스쿨제도 등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새빛의 법률세상\_하나

새빛이 이겨서 기쁜 사건

# 포괄임금제 합의의 효력 및 통상임금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6월 12일 선고 20011가합9858 임금



성미경 변호사

### 사실관계

피고 운수회사에는 운전직 근로자들과 정비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은 매년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지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임금협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6년 7월 19일 전국지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조합과 2006년 7월 1일부터 교통비, 근속수당을 폐지하고 임금제도를 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러한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는 2006년 7월 경부터 정비원들을 제외한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9년 6월 전국지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조합과 운전자에게 무사고 포상금을 5만 원 인상하여 지급하고,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한 정비원에게 월 5만 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2009년도 임금협정 체결 시 정비원의 위험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회사 정비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가 근속수당, 교통비를 기본급화 하는 호봉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한 이후 정비원인 원고들에게는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험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이를 항목에서 누락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근무, 대체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법정 제수당”이라고 합니다.)을 산정하였으므로, 해당 미지급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새빛의 주장

법무법인 새빛은 1심에서 피고 운수회사를 대리하여, 피고는 정비원들에 대하여는 기본급에 법정 제수당을 합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여 왔으며, 더불어 노사합의로 임금항목에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2006년 7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한 이상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원들에게 지급된 위험수당은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근속수당, 교통비, 위험수

당이 제외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실근로시간에 의한 법정 제수당을 산정하더라도 이미 원고들이 지급받은 법정 제수당이 실근로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 제수당을 초과하므로 포괄임금제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임금협정서에서는 승무운전자와 정비원의 임금체계를 구분하고 있는 점, 원고들의 급여대장상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매월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가 지급되었고, 원고들은 수년간 우와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승무운전자와 달리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근속수당, 교통비를 더한 금액을 합한 월정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임금지급방식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위험수당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존 판례의 입장이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또한 포괄임금제 합의가 유효한지 살펴보면 여러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정비사들의 당직근무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노동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인 성격을 일부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야간당직시간 15시간 전체를 모두 실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비와 같이 통상 9시간 정도 근로시간을 인정하여도 지난침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합의가 원고들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해당 판결의 시사점

위 판결은 비록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포괄임금제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포괄임금제의 성립을 긍정하였고, 정비원들의 야간당직근무 또한 실제 업무의 성격을 살펴 주간근무에 비하여 노동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인 성격을 일부 가진다고 보아 당직근무시간 전체를 연장·야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새빛의 법률세상\_둘

### 주요 판례 사례

## 진보성 없는 특허에 기한 특허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대법원 2012년 1월 19일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 1.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행사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특허의 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이 유무를 판단하여 진보성이 모자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을 기다림 없이 당해 특허가 무효임을 인정하여 특허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및 그 근거가 쟁점이다.

### 2. 종전의 판례

종례 대법원(91마540)은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면 특허무효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이 기술에 비주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소위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 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소위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다른 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신규성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있으나 진보성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위 판례와 다르게 대법원은 96후238판결에서 “등록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에 불과할 뿐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무효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

정리하면 특허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과는 달리 진보성 결여는 침해소송법원이 무효심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판례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혼재하고 있다.

### 3. 학설

학설은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 부여행위를 행정법상 당연히 무효인 행정행위로 보아 침해소송법원이 곧바로 특허의 무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절대적 무효설”,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심결의 확정 전까지는 적법 유효하게 존속하고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으로, 침해소송에서의 무효판단은 무효심판에서의 절대적 무효와는 구별되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보는 “상대적 무효형변설”, 특허법을 근거로 한 특허권의 행사가 하자 있는 특허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러한 특허를 근거로 한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권리남용형변인정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 4. 이 사건 판례의 결론

2010다 95390전원판례는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특허권침해 소송 담당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라고 판시함으로써 그동안 불분명했던 판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한 점에 의의가 있다. ●

## 새빛의 법률세상\_셋

최근 개정 법령

#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1.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행법상 동산 혹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민법이 정하는 질권(민법 제329조, 제345조)을 설정하는 방법과 법문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무상 인정되어 온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만이 존재하였고, 위 질권설정과 양도담보의 방법에 대해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거래에서 안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또한, 자적재산권은 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을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타파하기 위하여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 10일 제정되어 돌아오는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동산 · 채권 · 자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지금의 입밖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 채권, 자적재산권 등의 보유자신에 대한 자산 유동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꾀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따라 제정,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 2. 주요 제정 내용

### 가. 동산 ·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법 제3조 및 제34조)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 나. 담보권설정자의 자격(법 제3조, 제4조, 제34조 및 제37조)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 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다. 균담보권(법 제5조 및 제37조)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때도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설정된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라.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자의 명시의무(법 제6조 및 제37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여부를 명시하도록 함.

[뒷면에 계속](#)

## 새빛의 법률세상\_셋

### 최근 개정 법령

#### 마. 담보등기의 효력(법 제7조 및 제35조)

1) 동산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동산에 설정된 동산 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가 행해졌으면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르도록 함.

2) 채권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

#### 바. 담보권의 효력(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제37조)

1)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담보목적물에 맞는 물건과 종물(從物) 및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인도 청구 후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담보목적물의 과실(果實)에 대하여 권리 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도록 함.

2)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멀실, 훼손, 공용징수뿐만 아니라 매각,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에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는 담보권 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담보목적물 점유침탈(占有侵奪) 등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사. 담보권의 실행(법 제21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

1) 동산담보권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외에 취득정산, 처분정산의 실행방법을 인정하되, 취득정산 및 처분정산은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후 담보권 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야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자에게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 의무를 부여하며, 다만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 또는 임시압류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하여 그 의무를 면 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담보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공동담보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뒷순위 담보권자가 앞순위 담보권자의 다른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대신하도록 하여 각 담보목적물의 뒷순위 담보권자를 보호함.

뒷면에 계속

## 새빛의 법률세상\_셋

### 최근 개정 법령

#### 아. 담보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의 신청 및 등기신청의 접수(법 제38조, 제41조 및 제45조)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연장에 대하여 하고,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등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으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

#### 자. 담보등기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법 제49조)

피담보채권 대부분이 상사채권이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도 소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 할 수 있도록 하되, 담보등기에 관하여 연장 등기할 수 있도록 함.

#### 차. 지적재산권담보권의 등록 및 그 효과(법 제58조 및 제59조)

지적재산권자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권을 등록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함.

### 3. 법 제정의 의의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동산, 채권의 비중은 평균 59% 수준에 달하지만, 금융권은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대출해줄 때 대부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려 하고 있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로 2011년 6월 기준 국내 은행의 동산, 채권 대출 규모는 747억 원 수준으로 전체 원화 기업 대출액 567조 5,000억 원의 0.01%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되는 동산·채권 등에 담보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이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그리고 부동산 자산보다 동산이나 금융자산에 여유가 더 있는 중소기업들에 원활한 자금확보를 꾀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실리기에게 공헌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보다 먼저 동산담보대출 제도 등을 정비한 미국은 1980년대에는 동산, 채권 등 담보대출의 규모가 20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말 4,800억 달러까지 급성장하였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 전례가 있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이 연일 역대 최고 매출을 간신히 하는 데 반해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회사를 경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지금 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 한결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 새빛만평\_하나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개념(1)



송창영 변호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과거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이 법 적용 대상인 유기증권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법 적용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과거의 입법방식은 죄형법정주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수법지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증권회사 등이 이를 취급할 수 없어 금융혁신을 제한하고 투자자 보호 규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성’을 핵심적인 요소로 한 포괄적인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법 제3조 제1항). 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②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권리 ③원본 손실의 위험(투자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알면드립니다 |

이 글은 저자가 BFL 제40호 2010년 3월에 기고하였던 같은 제목의 글을 요약한 것임을 알려둔다.

#### 1. 이익획득 또는 손실회피 목적

먼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치변동이 있는 실물자산을 ‘소비 목적’으로 사들이기로 약정하는 경우와 같이 이익획득 또는 손실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러면 대상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위의 목적은 예금, 보험상품도 공통으로 지니는 속성이며 금융투자상품은 후술하는 ‘투자성’ 요건에 의하여 이들 금융상품과 구별될 수 있을 것이나, 위의 목적이 상업목적의 일반상품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거래의 목적은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거래 대상 상품의 속성과 포괄적인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의 취지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뒷면에 계속



## 새빛만평\_하나

### 2.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권리

다음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권리' 이어야 한다. '현재'에 금전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권리인 증권의 특성에, '장래'에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인 파생상품의 특성에 해당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을 현물거래와 구별하는 요소로서 '장래'란 어느 정도의 장래를 말하는지가 문제 되는바, 영국은 7일, 호주는 외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는 3일, 후자는 1일로 각각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그 의미를 해석에 맡기고 있다.

### 3. 원본 손실의 위험(투자성)

끝으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즉 투자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금융투자상품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를 통해 전통적인 예금 등 원본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이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전의 총액을 계산하면서는 판매수수료, 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하고,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계산하면서는 환매수수료, 해지수수료, 각종 세금,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 또는 채무조정, 그 밖에 이에 따르는 사유 때문에 애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되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을 제외 한다.

원본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는지는 금융상품 자체의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원본 손실의 위험과 금융상품의 유통과정에서의 가치변화(시장위험)에 따라 발생하는 원본 손실의 위험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즉, 유통성이 제한된 금융상품이더라도 상품 자체의 구조에 따른 원본 손실의 위험이 있다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상품 자체의 구조상으로는 원본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더라도 유통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시장위험에 따른 원본 손실의 위험이 있다면 역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도산 등 신용위험을 투자성의 기초가 되는 위험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도 문제 된다. 만일 발행인이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까지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금전채권이나 예금 등도 모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 또는 채무조정, 그 밖에 이에 따르는 사유 때문에 애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이 되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에 포함해 원본 손실 위험의 판단 기준에서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

금융상품에의 투자시점과 투자금의 회수시점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비록 투자금액과 회수금액이 같거나 회수금액이 투자금을 일부 웃돌더라도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회수금액을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현가회할 때 회수금액의 경제적 가치가 투자금액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면 원본 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럴 때 이자율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예금 등이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포섭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원본 손실을 이해하면서는 경제학적인 개념이 아닌 시간가치를 배제한 법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 새빛만평\_둘

###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배우성 고문

#### 중국 국자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감독관리점정방법》공포

2012년 4월 11일 중국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는 《중앙기업해외투자 감독관리점정방법》을 발표하여 중앙기업이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비주력업종 투자를 하려는 안도며 특수한 목적으로 이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국자위의 심사 비준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점정방법》에 따르면 중앙기업이 해외에서 비주력업종 투자를 하는 경우 비주력업종 투자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여 비준해 줄 것을 신청하는 요청서, 비주력업종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결정내용,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연구보고서, 자산 실사 등과 관련된 자료, 프로젝트의 리스크 항목, 리스크관리 방법, 리스크방지 능력 보고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국자위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외자처 처장 궡링룡은 4월 18일 제6차 중국 기업 해외투자 간담회에서 발개위가 “해외투자 관리조례”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외투자 및 경제협작처부처장 왕성원은 상무부가 현재 이 조례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관련부처와 상호 협력해서 조율할 것이 많은 상태라고 말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완지페이는 간담회에서 중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인 지금 여러 부처가 상호 조율해서 관련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환경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지페이 회장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1년 말까지 중국의 해외 투자는 전세계 178개 국가 및 지역에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이 총 1만 8천 개이며, 비금융부문 대외투자액은 누계로 3,220억 달러를 달성하여 5년 전 대비 2배를 추월하였고 이것은 해외투자 부분에서 세계 17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상무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금년 1사분기 해외기업의 중국 내 투자는 세계 109개 국가 및 지역에서 1,096개가 중국 내 직접 투자를 진행하였고, 비금융부문 직접투자액은 누계 165.5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94.5% 성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중 M&A방식을 통한 직접투자액은 62억 달러로 동기 투자총액의 37.5%를 차지하였고 올 3월 말까지 중국 비금융부문 대외직접투자 누계치는 3,385억 달러였다.

#### 중국자본 대일 투자 가속화 새로운 단계 진입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의 발전지향 모델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중국기업들이 새롭게 대일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의 구매력이 일본 기업들을 현재 경제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흥이투자회사는 미국의 TPG와 일본반도체생산업체 ELPDA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고, 대만의 흥하이(Hon Hai)는 일본 샤프의 주식 10%를 매수하였으며, 지난 3월 파나소닉은 그룹의 가전사업 일부를 중국 하이얼에게 매각했다. 2011년 렌상그룹과 일본전자회사는 일본에 개인컴퓨터 생산합자기업을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일 간의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사실 지난 10여 년간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트렌드를 보여왔지만 계속된 일본 내수의 침체와 엔화의 강세로 일본 기업이 수출 전선에 타격을 받음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적자에서 헤어나기 위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거나 신규 자금을 조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중국자본의 대일본투자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환경을 이용하여 중국 기업들은 일본의 기술과 브랜드파워를 이용하여 일본 내의 경쟁자와 경쟁할 수 있고 일본시장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일본 정부 또한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 내에 연구센타나 지역본부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감세혜택을 주는 등의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뒷면에 계속

## 새빛만평\_둘

### 중국 상무부,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 보충규정(5)》 공포

2012년 4월 26일 상무부는 《외상투자상업분야관리방법보충규정5》(상무부령 2012년제 4호)를 공포하였다. 《보충규정5》은 중국 내 개설점포가 30곳이 넘고 여러 공급업체의 다양한 종류와 브랜드의 식량품을 판매하는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단독 투자 형식의 경영을 하도록 하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위경영업무는 광동성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기타지역 해외투자자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 개설 점포가 30곳이 넘고 식량관련사업을 하며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는, 여러 공급업체가 공급한 식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외투자자의 출자비율은 49%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국 위생부, 《중외합작, 합자 의료기구 관리방법(의견수렴안)》 공포

2012년 4월 13일 중국 위생부는 《중외합작, 합자 의료기구 관리방법(수정의견수렴안)》을 공포하고 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견수렴안에는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는 영리성을 가질 수도 있고 비영리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구 설립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첫째 반드시 독립적인 법인어야 한다. 둘째, 투자총액이 1억 RMB(한화 170억 원) 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단, 중국 중서부지역 혹은 구혁명 근거지역, 소수민족지역, 변경 지역, 빈곤한 지역에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구를 설립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투자총액이 적을 수도 있으나 5,000만 RMB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합자, 합작의료기구 중에서 중국 측의 지분비율 혹은 권익이 30%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합자 합작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다섯째, 다른 법률, 법규, 규정등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사안내

### 중국 진출 기업 구조조정과 청산 전략 세미나

>> 최근 대중국 진출 기업들에게 현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초기 진출 기업의 전략 수정과 국내 모기업과의 사업 구도에 따른 철수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기진출 기업의 사업장의 이전 및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 등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법인 새빛과 중국로펌 대성이 공동으로 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최근 중국 철수 과정에서 기업의 비정상적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와 지역정부와의 갈등 고조, 노동자 임금 및 해고에 따른 갈등관계 해소 노력, 채권자와의 분쟁에서 사전 정리 등과 파견 경영진의 귀국 문제 및 청산에 따른 1여년 이상 정리 절차에 따른 사업 악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이번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지역 상공회의소와도 협력하여 지속적인 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일정안내

- 일시** 2012년 7월 12일 오후 14:00~16:00  
**장소** 부산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주최** 법무법인 새빛, 부산상공회의소, 중국 법무법인 대성  
**내용**
1. 중국 진출 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전략(법무법인 새빛 배우성 고문) -30분
  2. 중국 진출 기업 청산 및 구조조정(중국 법무법인 대성 서창영 변호사) -60분
  3. 중국 철수에 따른 한국 법검토 사항(법무법인 새빛 박진희 변호사) -30분

## 새빛만평\_셋

# 日本 M&A 시장에도 韓流가 가능할까… (상)



이정철 전무

필자가 일본과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으니 강산이 두 번 바뀐 셈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한류(韓流) 열풍으로 과거 유학시절과 다르게 일본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절정기에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경제의 급성장에 힘입어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지도가 상당히 제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류 열풍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정답은 일본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뛰어난 콘텐츠(영화, 음악, 문화 등)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일 기업 간 M&A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당연히 일본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기술, 시장, 역동적인 추진력 등등) 제공을 통해 일본 기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당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는 M&A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이다.

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재정악화, 기업실적 부진 등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일본 경제이지만 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일본의 위상은 아직도 공고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핵심기술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기술적 가치는 아직도 일본 기업만의 특권처럼 손에 쥐고 놓지 않고 있다. 이점에 착안하여 최근의 일본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변화를 꼼꼼히 검토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일본에 관심을 둬야 할 이유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오늘은 그중에서 일본의 M&A 시장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과거 일본 기업 하면 세계적이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연상시킨다. 이를 반영하듯 아직도 한국의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의존도는 매우 높다. 부품소재분야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 비중은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지만 아직도 핵심기술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처지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엔고 지속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이 일본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이 증가할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함께 증가하는 것은 기술력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Global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약진과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 덕에 양국 간의 기술격차는 축소 내지 Catch-up 되는 추세이며, 오히려 IT 등 몇몇 주력분야에서는 이미 일본을 추월하였거나 대등한 위치에 이르렀다. 과거 일본에서 단순기술 도입과 소화, 흡수 과정을 통해 기술 지립도를 높였던 시절이 있었다면 최근의 한국 기업의 일본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M&A)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 調和 & 相生

작년 3월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 필자가 모 경제신문칼럼에 실었던 한일 기업 간 M&A 시장 전망에 대한 기고문을 다시 들춰 보면 당시 일본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크게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상대로 일본 기업은 내외적 환경변화, 내수 침체, 엔고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이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한국으로의 투자 확대도 점차 가시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 바라보는 한국시장은 내수시장이 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점, 노사문제 국민적 감정 등 몇 가지 장애요인을 지적 하지만, 지형적 이점, 뛰어나 인프라, 고급 인적자원 높은 기술 수준 및 우량 Partner, 낮은 운영지급(전기세 및 세금혜택) 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국가 대비 문화적 이질감이 낮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 기업의 한국진출이나 한일 기업 간 M&A 교류가 증가 추세이며, 한국에 대한 투자가 타국 투자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필자는 일본의 자연재해 및 원전사고 우려 등에도 요즘 들어 오히려 일본 출장이 더 찾았다고 있다.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일련의 환경변화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느낌과 이를 근거리에서 몸소 확인해 보고 싶다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한 한일 기업 간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최근의 일본의 장기불황과 일련의 자연재해는 그동안 내수시장에 집착하던 일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눈을 돌릴 것이라는 가정을 현실화하고 있고,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 노력을 과거 대비 더욱 구체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문가라는 어느 외국인은 이러한 논평을 하고 있다. 예전부터 일본 기업은 제조업 기반에서 기술을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있으며, 실제 사주의 상당수가 기술자 중심이다 보니 위기상황에서도 기술로 승부를 걸리는 경향이 강하지만, 한국 기업은 소비자(시장) 지향적이며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빠르며 위기도 빠르게 회복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다. 필자 역시 이에 공감하는데 아마도 최근 한국기업의 성장과 Global 시장으로의 약진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욕심을 낸다면 이러한 한국 기업의 장점에 일본 기업의 기술력과 제조분야에서의 축적된 비결이 함께 결합한다면 얼마나 금상첨화일까 생각해 본다. 이는 곧 한국 기업이 지금 일본 기업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 (하는) 다음호에 연재됩니다.

## 새빛인의 서재

6월의 추천도서

### 내 인생의 논어 그 사람 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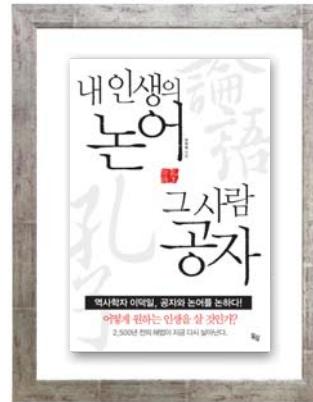
이덕일 씨, 육당 펴냄

공자는 춘추전국시대라는 대혼란기에 鲁(노)나리에서 태어나 3살에 관료출신인 아버지를 잃고 흘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나, 지금심이 넘쳐 천하에 뜻을 두고 학문에 전념했다. 그는 비록 무도한 세상과 복잡한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14년 동안 천하를 주유하고도 그 사상을 생전에 쓰지 못했으나, 죽은 후 부활하여 수 천년 동안 전 인류의 스승이요, 동지요, 연인 이요, 친구로서 항상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군주답지 못했던 제 경공의 변덕과 의지박약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삼손씨 무력화 계획의 실패로 노 정공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 수레를 따라 걷는 치욕을 당했고 포땅에서는 억류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 광야에서 살아남아 오늘날 우리의 정신 속에서 살아 영원히 그의 사상을 현실에 적용시키고 있다. 그의 꿈이 비로서 죽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안으로 인격완성에 힘쓰고 밖으로 천하의 평화를 갈구한 지식인이었다. 출신이나 계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며 오직 道에 나아간 경지에 따라 君子와 小人을 나누었다. 군자는 바람이고 소인은 물, 물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쓰러지므로 군자가 덕으로 정치를 하면 소인은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어 모든 잘못은 자비충에 있다고 하였다. 백성에게는 먼저 부유하게 하고, 다음 가르쳐야 한다고 하면서 더없이 따뜻하게 버리셨으나, 자비충에는 한없이 가혹한 짓대를 들이대았다. 또한 더없이 솔직하고 낙천적이었던 공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한탄하지 않았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좋아했고, 위선적이거나 巧言令色(교언영색)하는 사람을 싫어해서, 말을 교묘하게 잘하면서 낮빛을 좋게 꾸미는 사람은 仁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자기를 이기고(克己) 예로 돌아가야 하며(復禮), 이때 예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참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지키느라 그는 야수의 시대에 배고풀 수 밖에 없었다. 오히려 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빈과 천을 버려서는 안되며, 나리에 도가 없는데 부유하고 귀함은 수치라며 담담하게 웃었다.

그에 의하면 배움이란 修己(수기)의 도리를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고 治世 :



경세》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利人: 이인) 것이었다. 이 때문에 學問을 묻는 問) 것을 배운다(學)고 하여, 알려고 애쓰는 동기를 중요시하였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세계관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에서 나오는 역사적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군자에 의한 정치를 꿈꾸었다. 비로 이 때문에 무도한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는데, 공자의 서글픈 인생에서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그의 흥미로운 제자들 이야기이다. 공자학단으로 불린 이들은 스승의 잘못도 거리낌 없이 비판할 수 있었던 평등한 학문집단이었다. 나리에 쓰이지 못하고, 유랑했던 스승, 안될 것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인 스승을 그들은 왜 했을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천하가 스승을 버릴지도, 세상 사람들이 공자에게 미래가 없다고 손가락질했을 때에도 그들은 '선생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하고 생의 의지를 불태웠다. 그 제자들 중에서도 공자는 학문을 좋아하고, 노여움을 옮기지 않으며 허물을 두 번 하지 않았으며, 한 대그릇의 밥을 먹고, 한 표주복에 물을 마시면서 누추한 거리에 사는 것을 즐기던 안회를 가장 사랑했다.

이 책은 또한 공자를 닮은 많은 지식인들의 예를 든다. 사기 백이열전을 11만 3천 번 읽었다는 김득신 배고파고 소외된 학문이었던 악명학을 공부하다 부인이 자결하고 본인은 유배형에 처해졌음에도 즐겁게 학문의 길에 매진하였다 이광사, 하루리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했던 평화로운 세상에 태어났다면 교육자가 되었을 안중근, 천하의 이치를 어찌 주자 혼자 알고 나는 모른다는 말이냐고 당대 최고 학자이자 권력자인 송시열에 반박하다 사형당한 윤휴, 노론과의 정치싸움에 밀려 형제와 매제가 사형당하고 본인도 유배길에 올랐지만 오히려 불운한 처지에서 매일 덕으로 나아가 놀라운 경지의 학문적 업적을 이뤄내는 한편 기혹한 정치에 신음하는 백성의 사연을 애절양哀絳陽 : 목민심서에 실린 한시)으로 풀어낸 정약용,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도 여진족으로부터 북

## 새빛인의 서재

방을 지켜야 한다는 세종의 출동명령을 받아들인 김종서, 키치는 것을 좋아했고 농사지으며 학문을 닦다가 임진왜란때 의병을 이끈 조식, 현랑과와 균전제를 실시하여 신분자를 극복하고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조광조, 6두품이라는 신분의 한계로 인하여 당나리로 유학가 빙공과에 급제하고 토황소격문을 써서 황소를 평상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던 최치원, 새로운 체제를 꿈꾸었고 천명을 사줄 사람을 스스로 찾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여 과전법의 제창으로 구질사에 맞선 정도전 쓰이지 못할 책으로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봇을 들었던 유수원 이들 역시 영원히 우리의 정신 속에 살아있는 군자들로서 순간의 삶에 매몰되어 멀리 내다볼 줄 모르고, 오늘을 소진하고, 내일을 준비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빠아픈 교훈을 준다.

저자인 이덕일 교수는 승실대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되었으며, 그의 아름다운 호, 遷固·옛 것을 찾아 헤매다…에서 알 수 있듯이 아름다운 가치와 교훈들을 역사 속에서 찾아내어 널리 대중에 알리는 데 앞장서온 실천하는 지식인의 표상이다. 대중들로 하여금 시대와 인물을 의미있게 읽는데 그치지 않고 각자 깨달아 삶에 적용시키기 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설득력 있는 깊고 짙은 문장력을 가졌다. 저자는 시중일관 공자의 사상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하며, 전 우주, 전 지구, 전 공동체의 사회구조 문제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외친다. 또한 모르는 길을 찾게 하고, 좋은 질문을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가게 하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미 있는 답을 외우게 하고 이미 나 있는 좁은 길을 남을 밀쳐내며 달려가도록 가르치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개탄하며 개혁을 외친다.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실천하는 용기를 갖춘 저자에게서 공자가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 군자의 모습을 찾게 된다.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학이사습지 불역열호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

秦(진)나라는 비록 국토는 작았으나 그 뜻은 웅대했습니다. 나라는 벽지에 있었지만 행동이 알맞고 발랐습니다. 몸소 다섯 양피 가죽을 주어 백리하를 등용해 대부로 삼았습니다. 잡혀있는 사람도 3일 동안 말해보고 취했습니다.●

## 새빛인의 서재

7월의 추천도서

###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마라

백지연 씨, 암마 퍼냄



백지연과 김용. 이름의 무게가 세상의 무게와 같은 두 사람이 인터뷰와 인터뷰가 되어 이 책에 등장한다. 책을 다 읽어냈을 때 우리는 백지연이 바라본 김용을 통해 백지연이라는 사람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일석이조 아닌가.

백지연이 누구인가 83학번으로 연세대 심리학과 재학 중에는 빼 어난 미모와 존재감으로 브룩 쉴즈라는 별명으로까지 알려진 동경의 대상이었다. 1987년 MBC 방송국에 입사하자마자 카리스마 있는 진행으로 9시 뉴스데스크를 8년간 진행하며 전국의 시청자의 눈길을 고정시켰다. 전문직 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기 힘들었던 80년대 여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증거였고, 확실한 롤모델이었으며, 가슴에 한 번씩 품었던 시대의 영웅이었다. 그녀는 앵커이자 교육자로서 평생을 두고 늘 스스로 새롭게 변화하며 더욱 더 대단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김용은 누구인가. 먼저 그의 뿌리인 부모의 면면을 보자. 아버지 김낙희는 열일곱의 나이에 출로 월남하여, 서울대 치대를 나와 미국 사회에서 치과의사로 성공하였고, ‘항상 힘든 일을 먼저 하라;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네 기술, 네 실력을 먼저 쌓으라’며 실용을 강조하였다. 어머니 전옥숙은 시인 전병택의 딸로, 퇴계 이황을 전공한 철학자인데, 항상 이들에게 영생을 누릴 것처럼 살라고 가르쳤다. 그녀는 아들이 다트머스 대학 총장이 되었을 때 쇄도하는 인터뷰를 거절하며 아들의 직장을 가지고 다른 엄마들과 다르다는 착각을 퍼뜨리고 싶지 않다고 할 만큼 만민평등의 세계관을 그에게 형성시켰다. 김용은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 하버드대학에서 의학박사와 인류학박사를 취득하였고,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의 국제보건·사회의학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04년 세계보건기구 에이즈국장을 거쳐, 2009년 동양인으로 최초로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이 되어 교육개혁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4월 16일 세계빈곤척결, 저개발국가지원을 위한 기구인 세계은행의 수장이 된 대한민국의 영웅이다.

## 새빛인의 서재

### 7월의 추천도서

그를 추천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표현을 빌면, 세계은행의 리더는 발전적 역할과 조성의 중요성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김용은 가장 보장된 실용적 가치를 의사라는 직업으로 실현시켰고, 한편 인류학 박사로 인간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치료원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중요한 방법론으로 하는데, 현지인과 현지문화,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때에만 세울 수 있는 것이다. 통섭의 자세를 갖춘 그는 언제나 보건과 인권,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가 질병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심사숙고하였다.

하버드 재학 시절인 1987년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한 비영리기관인 'Partners In Health'를 설립하는 데 앞장선 이래 평생을 의학의 사회적 사용의 측면을 고민하며 저개발국의 보건 발전 영역의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그의 사회적 성공의 과정을 보면, 결코 무엇이 되기 위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지위에 오른다는 것의 의미가 오직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더 갖게 된다는 것으로, 할 일을 하다 보면 기회는 자연스럽게 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균형에 대해서 더 좋은 혜택을 받고 누리며 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원가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아픈 사람들에 주목하며, 진정한 공감이 사람을 움직이는 원천이라고 믿는다. 죽음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평등은 지속된다. 그는 현대 의료기술이 돈으로 질병치료영역과 예방영역 모두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인권침해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의학은 질병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가난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사회모순과의 싸움이기도 한 것이다. 어떤 질병인가보다도 어떤 사람인기를 더 중시하며 인간에 대한 사랑을 펼치는 그의 의술은 인술의 경지로 승화되었다. 그저 평생 어려운 사람을 돋는 일을 해온 그에게 직워나 자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전쟁을 겪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부모님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이제는 2세들이 세계를 위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생각하라고, 세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리고 성공이란 이곳에 누군가가 되고자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러 온 것이라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며, 정말 배워야 할 것은 마음의 습관이고, 배움의 태도는 끈질김과 대체능력이라는 평범하지만 묵직한 비밀을 전수해준다.

이처럼 인터뷰이 김용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인터뷰어 백지연이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젊은이들이여, 날개 펴고 세계로 나아가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재능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일하면서 꼼꼼한 상황들을 접하게 되면 긍정은 단순히 이성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태도가 아닌, 도덕적 선택이라고요.”

“냉소는 결국 겁쟁이가 마지막으로 숨는 곳”●

## 새빛마당\_하나

### 기고문

## 금융투자 성공을 위한 두 번째 비밀 : 잃지 않고 투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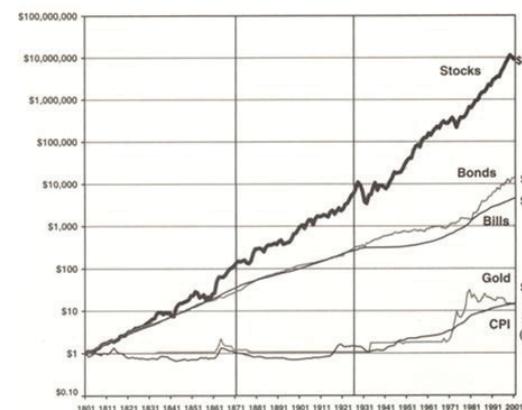


김일구  
한국씨티은행 부장

2007년 10월에 어느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제리미 시겔(Jeremy Siegel) 와튼스쿨(Wharton School) 교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기투자·옹호론자로 유명한 시겔 교수는 ‘주식을 장기로 투자하면 다른 어떤 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또 많은 사람이 주식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로 투자하면 잃을 위험이 없어서 위험하지도 않다.’고 주장했었죠.

그의 저서 ‘장기투자바이블(Stocks for the long run)’에 나오는 각 자산별 지난 200년간의 총수익자수가 <그림>입니다. 총수익(total return)이란 배당이나 이자와 같은 현금수입에 가격상승까지 더한 것을 말합니다. 총수익을 기준으로 보면 주식은 지난 200년간 놀라운 증식력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주식에 1801년 1달러를 투자했다면 200년이 지난 2001년 말에는 자신이 무려 8백8십 만 달러로 불어났기 때문이죠. 채권은 200년간 증식해도 1만 4천 달러에 불과했고, 1년 이하 단기채권(bill)이나 금(gold), 소비자물가(CPI) 등도 마찬가지로 주식만큼 놀라운 증식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림> 200년간(1802~2001) 각 자산별 총수익



자료: Jeremy Siegel,  
Stocks for the long run

물론 주식에 투자하면 1929년이나 2008년과 같은 극심한 금융위기로 격이 폭락하기도 했겠지만 시겔 교수는 이 역시 장기로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200년을 놓고 보면 투자기간이 3년으로 짧았을 때 주식이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 경우가 67%입니다. 즉 채권이 주식보다 좋은 투자처였던 시기가 1/3이나 됩니다. 그러나 투자기간을 30년으로 길게 잡아보면 99%의 경우에 주식이 채권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주식을 위험하다고 하는 세간의 평가는 투자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이며, 투자기간을 충분히 늘려 잡는다면 주식과 비견될 투자자산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나는, 어디 하나 흠 잡을 끗 없는 시겔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머릿속에서 그의 강의가 1929년 라스скоп(John J. Raskob)의 논문과 자꾸만 겹쳐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스скоп은 당시 듀퐁사의 이사였는데 그가 대공황 불과 두 달 전에 한 저널과 인터뷰한 글로 인해 투자계에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우량주에 매월 15달러씩 20년간 투자하면 원금 3,600달러가 8만 달러로 증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920년대 10년간 주식시장은 엄청난 활황이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20년간 지속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라스скоп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Everybody ought to be rich)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시겔 교수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고 라스скоп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밝혀졌지만(1929년부터 매월 15달러씩 우량주에 투자했다면 20년 후 자산가치는 8,500달러였다.), 두 사람의 주장은 모두 ‘주식을 장기로 투자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하는 똑같은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머릿속에서 두 사람이 겹쳤나 봅니다.

대공황으로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이었던 1929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이었던 2007년 10월에도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투자자들은 장기로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었고, 시겔 교수와 라스скоп의 주장이 투자자들 믿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본다면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가 폭락 이후에 투자자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대공황으로 주가가 폭락한 후에는 거의 20년이 지난 1940년대 후반까지도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주식투자

## 새빛마당\_하나

를 위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데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주식투자를 위험하게 보는 시각이 팽배해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식형 펀드에서 돈을 빼나가고 있습니다.

현명했던 투자자들이 몇 년 만에 갑자기 바보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주식을 장기로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는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 이론과 현실의 괴리

지난 호에는 ‘펀더멘털에 따라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펀더멘털에 따라 투자해야겠지만, 현실에서는 펀더멘털이 어떤지 아는 데 6~12개월의 시차가 걸립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에 따라 투자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펀더멘털과 완전히 동떨어진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주식을 장기로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논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의 시겔 교수의 논리를 현실의 영역으로 옮겨 보죠. 1달러가 200년 후에 8백8십 만 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연평균 8.3%씩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펀드에 투자하면 매년 3% 가까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를 매년 차감하면 1달러는 200년 후에 3만 2천 달러가 됩니다. 오탏가 아닙니다. 3백2십 만 달러가 아니라 3만 2천 달러가 맞습니다. ‘복리의 마법이죠. 아니면 매년 약 4% 되었던 배당은 재투자하지 않고 수수료를 냈든 물건을 산든 다 썼다고 가정해볼까요? 원본은 그대로 계속 투자하고 있어도 현금으로 들어오는 배당은 썼다고 가정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투자도 결국 소비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테니까요. 총수익지수에는 배당이 수익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는 주가지수에는 배당수입은 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배당을 다 쓴다고 가정하면 총수익지수를 버리고 주가지수를 쓰면 되는데, 이렇게 가정하면 1달러는 200년 후에 4천 7백 달러가 됩니다. 역시 오탏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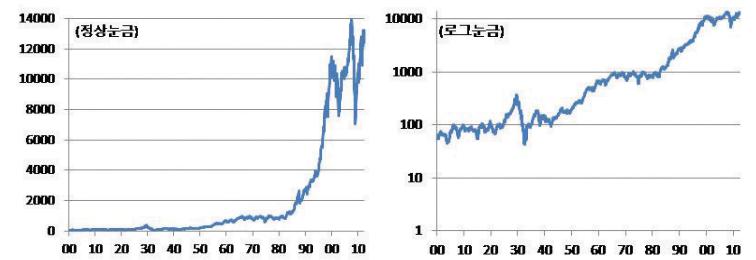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200년이나 투자하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의 투자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30대에는 결혼하고 자식

낳아 기르고 하다 보면 저축이나 투자를 할 여유자금이 없고, 있더라도 소액에 그칩니다. 40대에 들어 월급이 올라 여유자금이 생기지만 50대 후반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따라서 주식에 적극적으로 많은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20여 년에 불과합니다. 배당은 다 썼고, 투자기간이 20년이었다면, 1달러는 20년 후에 2달러 30센트가 됩니다. 역시 오탏가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원금의 두 배 이상으로 자신이 늘어났습니다. 200년간의 평균적인 수익률로 20년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평균과 다릅니다. <그림2>는 미국의 대형 우량주 30종목을バスケット으로 한 다우존스 주가지수를 1900년부터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은 우리가 흔히 보는 주가 차트인데, 오른쪽은 Y축을 로그눈금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왼쪽 차트에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령 주가지수가 7,000포인트에서 14,000포인트까지 오르는 것과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까지 오르는 것은 모두 2배 오른 동일한 수익률인데, 7,000에서 14,000까지 오른 것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 같고 100에서 200까지 오른 것은 표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는 주식투자의 장기적인 성과 추이를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반면 오른쪽처럼 Y축을 로그눈금으로 바꾸어 놓으면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오른 것과 1,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까지 오른 것이 모두 10배 오른 것으로 동등하게 한 칸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면 분명해지는 것이 주가는 오를 때가 있고, 안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림2> 다우존스 주가지수(배당제외)



## 새빛마당\_하나

다. 1900년부터 2차대전 끝날 때까지 주가는 거의 오른 것이 없다가 2차대전 이후 20년간 주가가 10배 올랐고, 또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까지 주가는 횡보만 하다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 10배 가까이 올랐고,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2년간 주가는 또다시 오르내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몇%씩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20년 투자가 주가가 오르는 시기에 해당될지, 아니면 장기간 횡보만 하는 시기에 해당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죠. 20년간 투자해서 10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수익이 전혀 생기지 않아 노후 계획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현실에서는 주가가 오를 때는 ‘혹시 지금이 주가가 10배 오른다는 그 20년에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투자했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혹시 지금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만 반복한다는 그 시기가 아닐까?’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200년간 연평균 8.3%씩 올랐으니 지금 투자하라. 부자가 될 것이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주식시장의 역사를 연구해온 번스타인(William J. Bernstein)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Everybody ought to be rich)’는 라스콜의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지금부터 투자하면 손자는 부자가 될 수 있다(Everybody's grandchildren ought to be rich).’ 손자 대까지 계속 투자하는 정도의 장기라면 확실히 자신 가치가 많이 늘어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

경제학에 케인즈 혁명(Keynesian Revolution)이란 것이 있습니다. 케인즈 이전의 경제학을 고전학파라고 부르는데, 고전학파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와도 정부가 수요를 늘리는 경제정책을 쓸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수요가 위축되어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 가격이 하락해서 더 많은 수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는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줬고 투자지출을 했기 때문에,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를 세이의 법칙(Say's Law)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케인즈는 이러한 조정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장기라면 우리는 이미 모두 죽었을 텐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그래서 케인즈는 단기적인 경제처방을 제시합니다. 수요가 둔화되어 나타나는 경기위축에는 정부가 나서서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재정정책 등을 써라는 것이 케인즈 혁명의 주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생각의 변화를 ‘혁명’이라고 부른다면, 투자의 세계에서도 분명 사고의 혁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기난하게 죽고 손자대에 가서나 부자가 되는 투자법을 믿고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요.

### 잃지 않는 투자법

잃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 한 가지는 나왔습니다. 손자 대까지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투자를 원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데 잃지 않는, 그리고 투자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은 투자법이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데, 목표수익률이 나올 때까지 꾸준히 투자하십시오.

투자에는 정해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기간과 투자수익률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적립식 투자를 할 때 투자기간을 먼저 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3년, 5년, 아니면 10년을 적립한다고 해서 플러스 수익률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10년씩 투자했다고 해도 만기가 97년 외환위기 때여서 주가가 70% 하락했거나,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여서 주가가 60% 하락했다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기간을 내가 정하면 투자수익률은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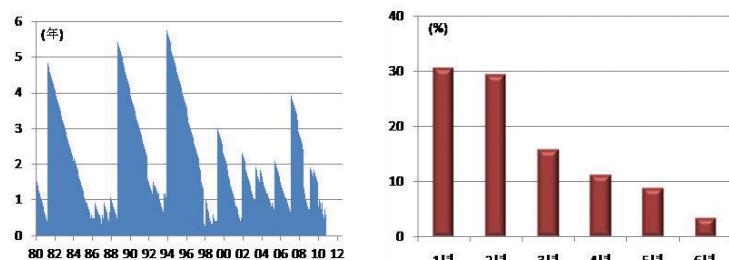
그래서 적립식 투자의 사고방식에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투자기간을 정하지 않고, 투자수익률 목표를 먼저 정하십시오. 한국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한다면 20%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투자한 원금 대비 20%의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 계속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원금과 수익금을 찾고, 처음부터 다시 적립식 투자를 하십시오. 20% 수익률이 나올 때

## 새빛마당\_하나

까지 투자하기로 했으니,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목표수익률을 내가 먼저 정했으니, 투자기간은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국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했을 때의 사례가 <그림3>입니다. 20%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데 짧을 때는 1년도 걸리지 않는데 길어지면 5년을 넘기도 합니다. 월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1년 만에 목표수익률 20%가 달성되었다면 투자 원금 1,200만 원에 수익금 240만 원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렸으니 만족할만합니다. 5년 만에 목표수익률 20%가 달성되었다면, 투자원금 6,000만 원에 수익금이 1,200만 원 생깁니다. 투자기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투자로 벌어들인 금액이 크니 만족할만합니다. 또 5년에 20%가 낮은 수익률도 아닙니다. 목돈을 5년 동안 투자한 것이 아니라 매월 적금처럼 투자한 것인데, 은행의 적금수익률로 계산하면 연 8%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80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 주식시장에서 한 번도 실패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림3> 목표수익률 20% 적립식의 목표달성 소요기간 및 분포



이 투자법은 한국처럼 주기가 크게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효과가 큽니다. 주기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 모으고, 주기가 한번 크게 오를 때 원금의 20% 수익을 얻고 빠져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대세상승 국면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위아래로 움직여주기만하면 됩니다.

주기의 오르내림이 작은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목표수익률을

15% 정도로 낮춰 잡아야 합니다. 1900년부터 현재까지 사례를 보면 95%의 경우에 7년 이내에 15%의 수익률이 달성되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10년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원금의 15% 수익은 적금수익률로 계산하면 7년인 경우 연간 5%에 가깝고, 10년 씩 걸렸다고 해도 연간 2.5%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예금금리를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에도 결코 손해를 본 투자는 아닙니다.

주식투자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현재 주가는 버블의 정점이던 90년초의 주가에 비해 1/4 토막인데, 이런 경우에도 목표수익률을 정한 적립식 투자가 성공적이었을까요? 일본시장에서도 주가의 오르내림은 있기 때문에 목표수익률을 7%로 낮게 잡으면 대부분 6년 이내에 목표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역시 적립식이라는 점, 그리고 일본의 예금금리를 감안하면 결코 낮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지금 주가보다 4배 높았던 90년초 최고점에서 투자를 시작한 경우인데, 이 투자에서 7% 수익률이 달성되는 데는 1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1970년부터 현재까지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약 1%가 이에 해당됩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의 시기에 17년이 걸린 것인데, 이 정도면 무시해도 될 만한 예외인 것 같습니다.

### 다음 호에는 시장의 본성

학계와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에 장기로 투자하면 돈을 번다고 주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제한된 수명을 가진 현실의 인간들이 실천하기란 참 어려운 주장입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을 만나본 결과 주식에 장기로 투자해서 의미있는 돈을 벤 경우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금융투자자로 투자해서 벤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다니던 회사에서 주식을 나눠줬는데 그 주기가 크게 오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성공사례가 희박한 '무조건 장기투자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미리 목표수익률을 정한 투자'를 권합니다.

다음 호에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본성을 짧지만 깊이 들어볼까합니다. ●

## 새빛마당\_둘

### Rocky Mountains



박진희 사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 로키를 향해 버스가 달립니다.

버스 안에는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이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 하며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었고 설레는 마음을 한가득 가지고 출발한 여행은 자다깨기를 반복했을 때 어느덧 산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길이 1,500km, 너비 80km, 북아메리카를 길게 이어주는 3,000m급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로키산맥! 캐나다 로키산맥의 광활함에 입이 꽉 벌어졌습니다. 참 많이 달렸다고 생각했는데도, 나는 아직 산속을 달리고 있었고 좌우로 보고 있는 신들이 다 하나같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신봉우리가 많다 보니 아산 저산의 별명도 참 많은 그곳은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곰과 신양 등을 친구처럼 만날 수 있는 대자연의 보고였습니다. 로키산맥이 매우 광대한지라 마음이 원하는 만큼 다 둘러볼 수는 없었지만, 제가 여행에서 보고 느낀 대표적인 관광명소의 모습들을 기록해 보려 합니다.

#### 컬럼비아 대빙원 아사바스카 (Athabasca Glacier)

컬럼비아 대빙원은 북반구에서 북극 다음으로 큰 규모(약 325km<sup>2</sup>) 밴쿠버의 전체 면적과 맞먹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컬럼비아 대빙원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아사바스카 빙하에 오르려면 중간마다 갈피진 틀 때문에 도보나 일반차량이 아닌 특수제작된 설상차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고산지대의 빙원은 산 위이나 고지의 평원에 쌓인 눈이 여름에 녹지 못하고 계속 쌓임으로 인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쌓인 눈이 30미터 이상의 두께가 되면 아래쪽에 쌓인 눈은 압력을 받아 얼음으로 변하고, 계속 눈이 쌓이게 됨으로써 아래쪽의



1

얼음이 두꺼워지게 되어 계곡처럼 넘쳐 흐르게 되는데 이것이 이 빙하입니다. 단순히 얼음길인 것 같았던 이곳의 두께가 최대 350m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이 오랜 세월 내려 만들어진 진기한 광경인지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빙원 물고랑에 빙하수가 녹아 흐릅니다. 150년 전의 눈이 녹은 빙하수는 오염이 없는 가장 순도가 높은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작은 통에 빙하수를 담아마사곤 합니다.



2

- 1 로키산맥 전경
- 2 컬럼비아 대빙원 아사바스카
- 3 비퀴가 매우 큰 특수제작 된 설상 차
- 4 Lake Louise



3



4

## 새빛마당\_둘

### 루이스 호수 Lake Louise—로키산맥의 보석

루이스 호수(Lake Louise)는 밴프 국립공원 내에 있는 호수로 세계 10대 절경 중의 하나라고 꼽힐 정도로 아름다워 로키산맥의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길이 2.4km 폭 500m 최대 수심 70m의 큰 호수로 수면에는 눈 덮인 빅토리아 산(3,264m)이 거울같이 투영되어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빙하에 깎인 바위가루가 호수 바닥에 가리앉으면서 햇빛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호수의 색은 맑은 에메랄드 빛을 띠고 있는데 이곳에서 카누를 타고 노를 저어 강의 한가운데 가면 가슴 벅찬 황홀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1



2

### 에메랄드 호수(Emerald Lake)

요호 국립공원의 61개의 호수와 연못 중에서 가장 큰 에메랄드 빛의 맑고 아름다운 호수로 공원 내 field 마을 가까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이 호수의 에메랄드 빛도 루이스 호수와 마찬가지로 빙퇴석(빙하에 운반되어 쌓인 돌무더기) 의하여 발현된 색이라고 합니다. 호수 주변에 4km 정도의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어 에메랄드 호수의 멋진 풍경을 즐기며 산책을 할 수도 있어 여유가 된다면 한 바퀴 돌려보는 것도 꽤 좋습니다.

### 보 강(Bow River)

보우 빙하와 보유에서 흘러내린 물이 강이 되어 밴프, 캔모아, 코크런, 캘거리로 통과하는 587m의 아주 긴 강입니다. 메릴린 먼로(Marilyn Monroe)와 로버트 미친



3



4



5



6

1 보강을 배경으로 한 컷

2 호수 동쪽 1913년 개축된 호텔 샤토레이크루이스 Chateau Lake Louise)

3, 4 에메랄드 호수

5 Lake Louise와 카누

6 밴프Banff 시내 상점

(Robert Mitchum) 주연의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River of No Return, 1954) 작품의 배경이 되어 유명해졌다 합니다.

### 밴프(Banff)

보강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이 밴프 시내입니다. 인구 4,000명의 작은 마을로 관광객들의 필요로 형성된 도시라고 합니다.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들과 아기자기 즐비해 있는 상점들이 마치 동화 속 마을 같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유명한 밴프 스프링스 호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캐나다에 머물렀을 때 여행한 로키산맥은 대자연으로부터 신선한 에너지와 기운을 얻었던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도 생겼고, 큰 산 아래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새삼스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 여행을 하는 이유가 쉼을 얻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로기는 여느 휴양지 못지 않게 제 마음에 큰 쉼을 주었던 곳입니다. 제가 가진 걱정, 고민은 저 산 아래 다 묻어두고 와야겠다 생각한 그곳은 언젠가 꼭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저 예쁜 레이크 루이스 호수 위에 저명한 조각가들이 찾아와 얼음 조각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때 그곳에 가면 자연의 솜씨와 인간의 솜씨가 어우러진 또 다른 모습의 로기를 볼 수 있겠지요. ●

## 새빛마당\_셋

### 댄스와 함께 시작하는 인생 2막



류건호  
Sway Dance 대표

댄스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은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평소에 부족했던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 또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색다른 취미를 갖기 위해 배워보려는 이들도 있다. 먼저 시작한 친구를 따라 반신반의로 억지로 끌려온 듯한 사람부터, 남다른 의지와 도전정신으로 찾아오는 이들까지 다양하다. 처음의 목적이 무엇이든 댄스 구두를 신고 무대에 오른 이상 당신 인생의 2막은 시작한다.

#### 음악에 맞춰 즐겁게

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음악과 함께 한다는 점이다. 스웨이 댄스에서 가르치고 있는 댄스 스포츠는 10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곧 10가지 장르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이다 10가지 종목은 크게 모던댄스와 라틴댄스로 나뉘는데, 모던댄스는 월츠, 탱고, 폭스트롯, 퀵스텝 비엔나 월츠의 5종목이, 라틴댄스는 룸비, 차차차, 자이브, 삼비, 파소도블레의 5종목으로 구성된다. 이렇듯 댄스의 이름과 음악의 이름이 일치하는 것은 댄스가 음악 자체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댄스를 어려운 예술 장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댄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몸을 매개체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 댄스파티라는 또 하나의 문화

댄스를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댄스파티를 가게 된다. 그리고 댄스가 나의 몸을 움직임으로써 새로운 표현법을 익히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스웨이 댄스에서도 일 년에 세 번 정도 정기적으로 파티를 열고 있는데, 파티에 참석한 이들은 그동안 선생님과의 개인레슨 또는 친구들과의 단체레슨을 통해 갈고 닦은 댄스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파티에서 작은 공연들도 펼쳐지는데, 공연하는 이들은 2~3개월 동안 새로운 안무를 창작하고 꾸준한 연습시간을 가지면서 한층 발전된 자신과 만나게 된다. 공연은 그 규모가 큰가 작은가와 상관없이 내가 아닌 타인들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누구에게나 떨리고 조금은 두려운 경험이다. 그러나 공연을 펼친 후에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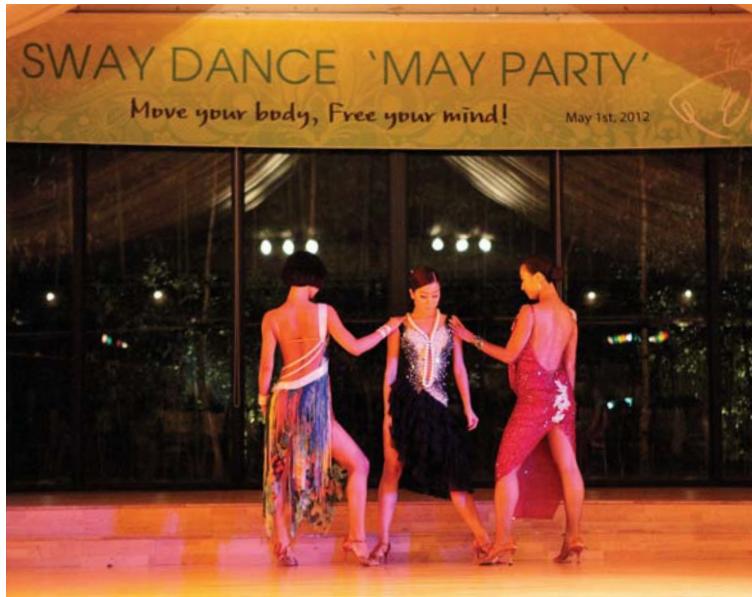
생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많은 경험 중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공연이라도 무대에서 본 이들은 자꾸만 다음 공연을 꿈꾸게 된다. 댄스파티에서 공연 외에도 즐거움을 주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다. 파티는 주로 드레스코드가 있어서 여성들은 이브닝드레스를 입고 남성들은 나비넥타이를 한 턱시도 차림을 한다. 이렇듯 특별한 의상을 차려입고 우아한 월츠를 추기도 하고, 신나고 빠른 박자의 자이브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일상의 고된 걱정거리들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다.

#### 싱글의 당당한 자신감, 커플의 멋진 하모니

댄스스포츠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교댄스는 커플댄스이다. 즉 남성과 여성이 짹을 이루어 함께 춤을 주는 것을 말한다. 커플댄스라서 혼자서 배우기는 어렵다는 선입견으로 시도 조차 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 일반적으로 커플관계에서 서로 의지하며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훌로서기를 잘하는 남녀가 커플로 만났을 때 더 성공적인 관계를 만들



## 새빛마당\_셋



어갈 수 있듯이, 댄스도 마찬가지이다. 혼자 몸의 중심을 세워서 정확한 스텝을 구사했을 때만이 커플댄스도 잘 출 수 있다. 그래서 솔로로 추는 춤이 더 우선이고 중요한 경우가 많다.

혼자 추는 춤이 익숙해지고 당당해지면 그때야 비로소 댄스 파트너와 함께 조화로운 댄스를 즐길 수 있다. 커플댄스에서 남성을 리더(leader), 여성을 팔로어(lower)라고 부른다. 남녀 모두에게 리더쉽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생각하기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댄스를 통해 리더와 팔로어는 평등하며 역할이 조금씩 다를 뿐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커플댄스를 배우며 서로 리더와 팔로어로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고 나면, 실제의 남녀관계에서도 서로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리더로서 남성은 기본적인 댄스의 흐름과 방향, 그리고 전체

적인 큰 틀을 만들어가며, 팔로어인 여성은 민첩한 김각으로 리더가 이끄는 방향을 인식하고, 전체적인 춤이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도록 완성도를 추구하는 역할을 한다.

### 몸치는 없다.

댄스를 배우러 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자신은 몸치라는 말이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을 가르쳐 본 결과 몸치는 없다. 인간에게는 모두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또 음악에 맞춰 즐겁게 몸을 움직이고자 하는 놀이 본능이 잠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스러운 욕구와 본능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닌 마음이다. 마음이 열리면 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게 된다. 자신 안에 잠재된 끼를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자신을 스스로 허락해주어야 한다.

### 건강한 육체, 긍정적인 마음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각종 육체적, 정신적 병을 앓고 있다. 우울증, 무력감으로 젊은이들의 자살률도 높아만 간다. 과잉행동증후군의 경우에도 표면적으로는 우울증과 반대의 현상을 보이지만, 이 또한 정신 건강이 손상을 입은 상태이다. 댄스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육체적인 건강과 함께 정신건강을 회복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방출된다. 댄스를 배우러 오는 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되는 것을 늘 목격하게 되지만, 그보다 더 큰 감격을 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유연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은 댄스를 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큰 선물이다. ●

## 새빛마당\_넷

축제

들꽃



서황희 대표변호사

축제가 시작되었다.  
내가안다.  
너도안다.  
세상도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희망을 보면  
축제가 시작된다.  
너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을 알면  
꿈을 꿀 수 있다.  
내 밖에 있는 것이 소망을 빌면  
꿈이 춤을 춘다.

축제가 이미 한창이다.  
내가한다.  
너도한다.  
세상도 한다.

보이지 않았다.  
내 속도에 취해서  
달려가는 관성을 이기지 못해서

느끼지 못했다.  
내 안의 것이 바빠서  
잃어가는 순수를 지키지 못해서

그러다 넘어졌다.  
피튀기고 명들고 차여서  
조여오는 한계를 받아들여야 해서

그렇게 처음 보게 되었다.  
의연하고 소박하고 우아하게  
짧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제야 그의 이름이 궁금해졌다.  
내가 물을 것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내가 무너질 것을 염려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쯤 넘어지겠지 하고  
나와 눈이 마주치면 가만히 웃어주리라 했단다. ●



김근우 호주변호사

## 새빛마당\_다섯

### 쓱쓱 새빛 영어

## ‘Conscience’ [명사] 양심

양심이 있으면, 양심적으로, 양심의 가책 등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언급되며, 변호사의 사명(변호사윤리장전 제 1장 1조 2호 : 변호사는 인권사상에 투철하고 양심과 용기로써 그 사명완수에 전력하여야 한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양심(良心)은 자신 행위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한다.

영어로 ‘Conscience’로 쓰이며 라틴어 Con(together-함께)과 Scire(to know-알다)의 합성어인 ‘Conscientia’에서 유래하였다.

The things that will destroy us are : politics without principle ; pleasure without conscience ; wealth without work; knowledge without character ; business without morality ; science without humanity ; and worship without sacrifice. (Mahatma Gandhi)

우리를 파괴할 일곱 가지가 있다. 원칙 없는 정치, 양심 없는 쾌락 노력 없는 부,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산업, 인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기도가 그것이다. (마하트마 간디)

Freedom of conscience

양심의 자유

Pang of conscience

양심의 가책

The changes in our life must come from the impossibility to live otherwise than according to the demands of our conscience not from our mental resolution to try a new form of life. (Lev N. Tolstoy)

우리 삶의 변화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마음의 결심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양심의 요구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살기 위한 불가능으로부터 나타나야만 한다.

(레프 N. 톨스토이) ●

## 새빛마당\_여섯

아홉 번째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소감문

### 뜨거운 원칙주의자, 최평규 회장님의 강연을 듣고



김민진 변호사

마음이 급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하는 기계 값도 20퍼센트는 족히 오를 것이라는 소식에 그는 더는 주저할 수가 없었다. 당장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일한 재산인 17평 아파트 미처 팔아 치웠다. 이제 빈털터리나 다름없는 그의 손에 주어진 것은, 막 부산항 통관을 마친 편 튜브 기계 한 대, 스물일곱 살, 그의 꿈이자 운명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기계는 그렇게 눈발이 하얗게 날리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급하게 몰아쳤을까. 한 발짝만 물려나서 생각해봐도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모든 순간마다, 그의 인생의 굽이굽이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도전의 연속이었다.

모든 것을 걸고 들어온 기계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던 순간에도, 청천벽력과도 같은 한국 중공업의 거래 중단 이후 무작정 가방 하나에 의지하여 미국시장을 헤매 야만했던 그날들조차. 노조원들의 린치에 하반신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면서도, 고집스러우며 민첩히, 원칙을 곱씹어내는 되새김질을 멈추지 않는 그였다. 과연 무엇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하였을까. 본능에 따라 안정적인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아홉 번째 지식인 포럼의 주인공 최평규 회장의 존재는 매우 추상적이지만 실재하는 일종의 상징처럼 다가온다.

그의 책을 읽고, 나는 간절히 그를 만나고 싶었다. 대체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춘 사람은 어떤 목소리로 말할까. 얼마나 큰 기운으로 좌중을 압도할까. 기대와 설렘에 뒤범벅한 노곤한 새벽, 뚜벅뚜벅 걸어들어와서 입을 연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 하나인 통일 중공업 노조와의 수년에 걸친 그의 투쟁과 설득의 과정이 생생히 들려왔다. 당시 대한민국 급속 노조는 말 그대로 무서운 존재였던 것이다. ‘시대의 잘못된 유산’이라는 그의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총회에서 지회로 내려오는 노조의 결정은 절대 적이었다. 한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모든 순간에 아주 특별했던 그의 노조는 결립돌 그 이상으로 베티고 있었던 것이다.

아우조차 알 수 없는 끝도 없는 파업 상식이 곧 비상식이 되는 야만의 세상에서, 최평규 회장은 묵묵히 상식을 심어갔다. 뿐만 대로 거두라. 상식을 심은 땅에는 상식이 나올 것이고, 비상식을 묵인한 땅은 다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결과가 있을 뿐이다. 과정은 비침하기 그지없었다. 사장과 부사장의 화형식이 거행되고, 멀쩡히 살아있는 자신의 상여를 지고 걸어가는 그들을 보며, 급기야는 ‘기업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던 그에게는 언론도, 정부도, 그 무엇도 도움이 되어주지 않았다. 애초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바리고 시작한 싸움은 아니었던 만. 당시 신문지상을 장식한 그의 얼굴에는 하소연 이상의 절망의 흔적이 가득했다.

마침내 2004년 4월 29일 경영정상화 선언문을 발표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가 온전히 웃을 수 없었던 이유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싸움이, 투쟁하며 벼텨온 그들에게도, 조합원 1400여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눈물 어린 상식을 심어온 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도 기쁘지도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시대의 잘못된 유산’이라 칭한다. 믿고 싶지 않아도 물려받아야 하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안전가는 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벼텨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유산을 오롯이 받들고, 최평규 회장은 저 멀리 어디가에 있을 상식과 원칙을 바라보며,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디뎌 나가는 아슬한 줄타기를 멈추지 않았다.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는 말이나 불법적인,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는 물려나지 않겠다.’

그에게는 원칙이 있었다. 그리고 견고한 원칙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었다. 그 확신은 자신이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데 망설임이 없는, 지금의 최평규 회장을 만들어 낸 일등공신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확신’이 있기에 그가 기울이는 노력은 남달리 끈질기며,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도 파격이라 불리는 ‘혁신’을 이끌어냈다.

## 새빛마당\_여섯

이제 나는 그에게서 장인정신을 본다. 공익과 사익의 경계, 그 어디쯤 서 있다는 그의 눈에는 이미 공·사익을 초월한 듯한 선한 의지가 그윽하다. 그를 지금의 자라까지 이끌어 준 확신과 노력의 모태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선한 의지' . 닳고 싶은 그의 원동력의 근원이자,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인내를 이끌어내는 바로 그것 정리하고만이 살 길이라 여겨졌던 속부터 씩어버린 통일증공업을 인수한 그가 1400여 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함께가야 한다.' 고 단연코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기술보국을 가슴에 새기고 뱀낮없이 기름 때에 절어 현장을 누비면서도, 후회 없이 한결 같은 맘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불법 부당과도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하는 그의 '선한 의지' 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터.

그렇게 살아온 그가, 이제 '역사의 단절' 을 이야기한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그래서 자신은 슬프다고 이야기한다. 경제회와 민주화의 대립구도 하루 하루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겨웠던 그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여 온 시대의 분열이, 그는 아프다고 이야기 한다. 세대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 행하니 갈라진 틈새가; 내게도 아프게 다가왔다.

처음 핀 튜브 기계를 들여오던 1980년 1월 밤 12시가 넘어선 시각, 기계를 실은 트레일러 두 대는 추풍령 고개에 멈춰 섰다. 매서운 눈발이 차갑게 내리 꽂히던 그날 밤, 트레일러 기사들과 국밥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던 그는 하염없이 울었다고 했다. 왜 눈물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눈인지 눈물인지 분간도 가지 않는 것은 얼굴을 훔치면서, 연거푸 소주 잔을 비워댔다고 했다. 그리고 돌아져보니 그것은 '불안' 이었다고 했다.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지금껏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나는 단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 내가 가려는 곳이, 과연 나의 길이 맞는 것인가.

바로그 '불안' 에서, 이유도 없이 흐르는 눈물에서, 나는 어렵잖은 실마리를 찾는다. 추풍령 고개에서 흘렀던 그의 눈물은, 현세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고민과 방황,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이다. 세대를 초월하여, 젊은이들은 불안해하고 방황하게 마련이다. 자신이 나아가는 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주저앉고, 아파하고, 눈물 흘린다. 최평규 회장이 살았던 시대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같은 이유로, 자기도 모르게 눈사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다.

최평규 회장은 그 불안의 순간들을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확신으로 살아내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인내하였고,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끝에 지금의 그가 서있다.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넘기던 그 하염없는 불안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젊은이들의 고뇌일 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러한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나는 결코 그가 그 불안을 넘어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굳은 지향점과 믿음으로 정직하게 노력하여, 불안을 떨쳐내지 않고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슬기로운 삶의 지혜를 터득해 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 역시 그러한 '확신'이며, '선한 의지'이며, '정직한 노력'이다. 그것이야말로 행하니 갈라진 시대의 틈새를 메워나갈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되지는 않을까.

여전히 멈추지 않는 눈발 속에 육중한 트레일러는 다시 출발한다. 한 치 앞조차 불분명한 한밤의 눈길이지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녹아있는 가슴 한 켠이 든든하다. 쏟아내고나니, '시원하구나. 까짓거 한번 해 보는 거지' 방금 전까지 눈물 범벅이던 그의 얼굴에 설렘 가득한 미소가 떠오르는 듯하다. 천연덕스럽게 酒5일 경영을 외치는 나의 연사가 깔깔깔 웃는다. 나도 깔깔깔 웃으며 회답한다. 역사의 단절을 잠시나마 메워주는 흐뭇한 웃음들이 우리의 아침을 훑고 지나갔다.●

## 새빛마당\_일곱

### #Save My Friend



정 윤 사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북한 주민은 굶주림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북하다 적발 시에는 3대를 멸하겠다는 김정은의 지시에도, 파악조차 되지 않는 수많은 북한주민들은 이 끔찍한 대가를 무릅쓰고 국경을 건너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국경을 건너 중국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중국 공안에 잡혀 다시 강제북송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괴롭니다.

얼마 전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고자 #SaveMyFriend에서는 온라인 서명을 통해서 210개 국가의 18만 명의 사람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적 차원의 배려를 요구하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였습니다. 강제북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니 그 이상일 것입니다. 짐승도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나만 북극과 아마존의 눈물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한민족 동포가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통일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운동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SaveMyFriend 티셔츠 판매수익금은 탈북자들의 구출과 통일문제 인식 확산을 위해 쓰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웃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힘이 필요합니다. ●

**twitter Hash Tag #SaveMyFriend**

**죽음으로 내몰리는 나의 친구를 살려주세요.**

판매수익금 전액 탈북자 문제와 통일문제 인식 확산을 위해 사용됩니다.

반팔라운드 티 <b>20,000원</b> (색상 : 민트, 오트밀)	후드 티 <b>40,000원</b> (색상 : 민트, 오트밀)	후드 티 + 반팔라운드 티 <b>세트 구매시 50,000원</b>
---	--	--

주관 : SaveMyFriend 운동본부  
구입문의 : 법무법인 새빛 유명산 팀장 02-560-5125 | 010-8377-8368 msryu@sebitlaw.com  
SIGN: [www.SaveMyFriend.org](http://www.SaveMyFriend.org) Your 30 seconds can save 30 lives.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새빛 러브레터는 새빛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편집부에서는 24시간 열린 귀, 열린 눈, 열린 가슴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땐 나에게만 의미가 되어준 글이지만, 이곳에 글을 보내주시면 우리 모두의 소중한 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 원고마감

어느 때고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 원고종류

##### 1. 살아가는 이야기

1,000자 정도(일기, 수필, 편지 등/필자 사진, 프로필)

##### 2. 추억의 사진

사진과 간단한 사진 이야기(사진 보낸 이의 프로필)

##### 3. 향기나는 이야기

세상을 살아가며 겪었던 훈훈한 인정,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마음을 열어주는 글이면 좋습니다.

##### 4. 짧은 글 긴 감동

짧지만 감동을 주는 체험담, 생활 속에서 느꼈던 작은 감동을 글로 써 보내면 됩니다. 5매 수필, 손바닥 에세이도 좋습니다.

5. 기타 알리고 싶은 소식 및 광고, 혼자만 감상하기 아까운 시, 수필 등의 작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새빛 러브레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정기 자문사 및 고객들께 광고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독자이벤트 | '새빛'의 이름으로 2행시를 지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10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담당자 | 성미경 변호사(mksung@sebitlaw.com)

유명산 팀장(msryu@sebitlaw.com)

전국민 상생의 관심 프로젝트  
동반자 프로젝트 3호 후기\_1

## 과학자와 발명가가 되고픈 막내동이



손지성 변호사

2012년 6월 23일 토요일 하늘이 맑고 뜨거운 여름날 덕수궁 옆에서 '동반자' 프로젝트의 세 번째 주인공 조명은(미동초등학교 4학년) 양을 만났습니다. 명은이는 함께 자리에 나온 어머니를 쑥 빼닮아서 처음 보는데도 모녀 사이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역사 등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의 책들을 열심히 읽어서 그런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화학 기호문제, 유전성 문제 등의 퀴즈를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보라고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자신의 질문에 정답을 맞히자 실력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신이 나서 계속 문제를 내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멀리하던 필자와는 달리 독서를 즐겨한다는 명은이가 정말 대견스러웠습니다.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발명가도 되고 싶다는 명은이 하고 싶은 것과 가고 싶은 곳이 많아서 엄마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조르는 집안의 막내동이(오빠 2명이 있습니다) 명은이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엄마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다음번에 만날 때에는 명은이가 원하는 선물인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와 축구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명은이의 동반자들은 명은이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이루는데 짹이 되어 함께 할 것입니다.●



IBK 캐피탈  
IBK 캐피탈이

'꿈나무 후원제도'를 통해  
함께 후원합니다.

전국민 상생의 관심 프로젝트  
동반자 프로젝트 3호 후기\_2

## 미래의 화학 박사와 즐거운 만남



서효성 후원자

"문제 한번 내볼까요?"

"아빠가 곱슬머리이고, 엄마가 직모이면 아이는 어떤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다른 문제도 내볼께요... C, Ca, Na, H<sub>2</sub>O, ...는 뭘까요?"

아주 오래전,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들었을 법한 질문인데도, 함께했던 어른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며, 그 어린시절로 함께 돌아가게 만드는 명은이의 질문들..

명은이의 질문들을 보면, 명은이가 어떤 공부를 가장 좋아하는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렇다. 과학! 특히 화학을 좋아하는 명랑한 소녀였다.

과학공부가 제일 어려워요'하고 이야기했던 나의 어린시절과는 달리, 과학에 이렇게도 관심많은 명은이가 참새롭게 다가왔다.

어릴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일까. 귀엽게 안경쓴 명은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미래의 과학박사이미지를 미리 그려볼 수 있었다.

호기심천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명은이의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같다.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하는 명은이, 아마도 톡 쏘는 화학적 반응(?)에 매력을 느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호기심들을 풀어가며, 재미있게, 행복하게, 무엇보다, 건강하게, 이 세상을 끝까지 걸어가길, 늘,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명은이가 되길 바란다.

화창한 여름날, 기분 좋은 만남을 맺어준 새빛가족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귀한 만남들이 더 풍성해지길 기대해본다.●

## 전국민 상생의 관심 프로젝트

# ‘동반자’ 4호 대상자 | 금북초등학교 5학년 김지혜 양

## 미소가 너무 예쁜 소녀.. 지혜를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성미경 변호사

동반자 4호의 주인공인 지혜는 멋스러운 까만 피부와 환한 미소를 가진 아이입니다. 현재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태국인 어머니와 1살 위 안다운 지연이와 약 6~7년전부터 방 2개의 10평 남짓한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혜의 아버지는 지혜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3년 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지혜 어머니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지도 못한 채 시댁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후 시댁에서는 지혜 어머니와 아이들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고, 지혜의 어머니는 어린이집에 몰래 찾아가 지혜와 지연이를 만났지만, 당시 영양실조에 걸려 무척이나 악원 모습의 아이들을 볼 때면 눈물만 흘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지혜 어머니는 개봉동에 있는 아주여성지원센터와 방송국의 도움을 받아 지혜 자매를 할머니로부터 데려올 수 있었고,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반지하방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 쑥스러운 탓인지 말은 별로 없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연신 상글거리는 밝은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살기 전까지 겪지 않아도 될 힘든 과정을 겪었음에도 전혀 그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 밝게 자란 듯 보였습니다. 밝은 성격 때문인지 친구들도 많아 친구들과도 스스럼없이 잘 어울려 논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하는 질문에 언니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화가가 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지혜… 그리고 체육시간을 좋아하고 달리기를 잘해서 3학년 때 까지 계주선수로 뛰었다고 조심스럽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그 또래가 가지는 천진난만한 모습에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만 지혜가 그 동안 좋지 못한 환경 탓에 천식이 걸려 예전처럼 달리기를 잘 할 수 없다는 사실과 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천식 탓에 그마저도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혜의 어머니는 정부보조금 60만 원과 어머니가 새벽에 야쿠르트 배달을 하면서 버는 30만 원 그리고 저녁에는 인근 지파공장에서 일해서 버는 약 10여만 원의 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 공



부방에서 지연이와 지혜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지만 앞으로 지혜가 커갈수록 여러 가지 학습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갈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혜의 어머니가 무릎과 염증으로 부리져 수술을 한 이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지혜 남매는 천식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매월 정기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혜 어머니는 아이들의 꿈을 위해 힘든 몸을 아끌고 새벽 저녁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의 일부인 7만원을 꿈나래 통장에 꼬박 저축을 합니다.

마침 새빛에서 만든 연필, 자, 포스트잇 같은 기념품들이 지혜에게 필요할 것 같아 가져갔던 기념품들을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자, 지혜 어머니는 본인

이 손수 형형색색의 실을 떠서 만든 예쁜 드레스모양의 수세미를 선물로 다시 건넵니다. 사실 수세미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수세미를 고맙게 받아 들고 지혜 어머니와 지혜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돌아오는 길…: 지혜에게 많은 후원자가 생겨 지혜의 저 미소를 그리고 지혜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계속 지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엄마를 도와 집안일도 너끈히 해내며 밝게 커 준 지혜를 위해 작은 힘을 모아주세요! ●



▲ 성미경 변호사(왼쪽) 민순희 복지사(오른쪽)와 함께 한 김지혜 양과 어머니

●●●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재단과 협력하여 동반자를 후원합니다.

**법무법인 새빛은 후원자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꾹꾹이 이겨낼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줄 동반자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 동반자의 의무

• 월 3만 원씩 10년간 후원     • 월 1회 동반자와 전화 통화     • 연 1회 동반자와의 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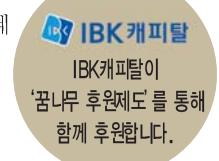
※ 모든 동반자의 의무는 법무법인 새빛도 함께 부담하며, 후원금은 전액 기부금 영수증으로 처리해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후원대상자별 동반자는 각 5명으로 한정됩니다.

※ 동반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새빛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박진홍 변호사 02-560-5109 jhpark@sebitlaw.com

### 기업후원을 받습니다

동반자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하나 동반자의 의무를 실천하기 어려워 후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9-627892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 새빛의 기념품을 소개합니다

새빛의 새 얼굴, 새 선물

## 새빛의 기념품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새빛은 고객 여러분의 생활 가까이에서 항상 새롭게 빛나고자 새빛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새빛 기념품에는 “새빛”이행시 공모 당선작들을 삽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념품 제작과 새빛 이행시 공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새빛 연필 & 지우개, 자

연필을 사용하시다가 지우개가 갑자기 필요한 경험이 누구나 있으시죠? 연필과는 별개로 관계인 지우개와 문구용품 자. 법무법인 새빛 또한 고객 여러분의 책상 위 사무용품처럼 언제나 생활 속에 밀착된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매가 | 연필 1,500원 / 자 500원



### 새빛크리스탈 문진

2012년 법무법인 새빛의 사훈인 “必日新”이 새겨져 있는 크리스탈 문진입니다. 새빛의 사훈인 “必日新”은 2012년 1월 새빛 추천도서 소설 ‘흑산’(김훈 작가)에서 인용된 문구로서, 우이 신영복 교수(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저자께서 새빛의 발전을 기원하시며 직접 써주신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책장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놀려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빛의 문진을 보면서 “必日新”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구매가 | 40,000원



### 새빛 슬리퍼

“새로 오신 님, 빛나소서”라는 멋진 이행시가 새겨져 있는 새빛 슬리퍼… 내집 내 사무실을 방문하는 이들이 어느 곳에서도 빛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새빛 슬리퍼를 한번 건네본다면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새빛 또한 새빛을 방문하는 고객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서는 번쩍번짝 빛이 나시길 항상 기원하고 있습니다.

구매가 | 30,000원



### 새빛 샤워타월

법무법인의 기념품으로 샤워타월이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너무 품격이 없어 보인다고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무더운 여름을 맞아 새빛에서 아심차게 기획한 샤워타월 기념품…

무더운 여름 고객 여러분의 시원하게 해 드릴 샤워타월처럼 법무법인 새빛은 고객의 마음속 구석구석 바닥까지 어루만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매가 | (1ea) 3,000원

새빛 기념품은 실비로 판매가 가능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문의 | 총무팀 유명산 팀장 02-560-5125



## 새빛 어린이 축구단 “꿈의 전사” 제2기를 모집합니다



새빛 어린이 축구단 “꿈의 전사”는  
“웃고 뛰놀자”라는 슬로건으로 신라의 화랑을 벤치마킹하여 축구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국가인재의 육성을 교육목표로  
2012년 4월 창단되었습니다.

새빛 어린이 축구단은  
프로구단에서 선수경력과  
다년간의 국제 유소년 축구클럽 지도를 한 코치를 영입하여  
선진축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정기적인 예절교육과 동화에서 찾는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  
위인들에 대한 교육, 글로벌 리더십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선수들이  
올바르고 착한 미래의 국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 총무팀 유명산 팀장 02-560-5125

\* 새빛어린이 축구단 ‘꿈의 전사’는 차원이 다른 인재양성, 굳건한 대한남아의 기상고취에  
공감하시는 새빛과 협력업체의 임직원 여러분 및 새빛의 고객분의 아드님들만을  
대상으로 하오니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實踐하는 知識人 포럼

8월 29일(수) 아침 7시 30분

‘철학하라’의 저자 황광우 선생님을 모시고  
열 번째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은  
고객 여러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오니,  
포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주 제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은 무엇이었나

일 시 2012년 8월 29일(水) 아침 7시 30분

강 사 黃 光 隅(황광우) ‘철학하라’의 저자

장 소 포스코P&S타워 3층 이벤트홀



\* 아침 7시부터 간단한 식사가 준비됩니다.

\* 신작순 100분께 도서 ‘철학하라’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Sway Dance*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You are invited into the world of SWAY DANCE

우리나라에서도 댄스는 이미 보편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움직임이 주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SWAY DANCE는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몸과 마음의 자유함을  
나누고 싶어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SWAY DANCE의 가족이 되어 음악에 몸을 맡기고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댄스를 통해 사랑하는 분들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할 수 있다는 꿈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여러분,

*Move Your Body!! Free Your Mind*

● 서울 강남구 삼성동 64번지 2층 청담역 6번 출구 Tel.02-543-8979 ● <http://www.swaydance.co.kr>

자문사 고객분들의 광고를 무료로 실어드립니다.

문의 | 법무법인 새빛 총무팀 02-560-5125



새빛의 법률서비스는 고객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빛의 전문가는 유능하고 바릅니다.

새빛의 직원은 친절하고 겸손합니다.

새빛인은 혁신의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새빛이 보내는 러브레터 제6호



단기 4345년 칠월

새빛이  
보내는  
러브레터  
**06** 호

[www.sebitlaw.com](http://www.sebitlaw.com)

#### 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5-3 포스코P&S타워 18층  
TEL 02 3448 0030 FAX 02 3445 5533

#### 논현 분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5층  
TEL 02 565 7188 FAX 02 542 7186

#### 포항 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46-5 3층  
TEL 054 242 3700 FAX 054 242 3702

단기 4345년 칠월